

운동부운영규정

제정 2002. 6.21 규정 제386호	2017. 4.26 규정 제890호
개정 2003.11. 7 규정 제452호	2018.11.28 규정 제947호
2004.11.15 규정 제485호	2021.12.14 규정 제1048호
2006. 1. 9 규정 제536호	2023.12.14 규정 제1108호
2006. 3.29 규정 제558호	
2008.12.11 규정 제618호	
2012. 1. 1 규정 제688호	
2016. 7.12 규정 제816호	

제1조(목적) 이규정은 서울시설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창단 육성하는 운동부의 제반 운영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“경기인”이라 함은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.

- ②“보수”라 함은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연봉액을 12월로 나눈 월급을 말한다.
- ③“운영비”라 함은 장비구입비, 훈련비, 출전비, 기타비용을 말한다.
- ④“감독기관”이라 함은 단장, 부단장을 통칭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공단 운동부 운영업무 전반에 적용한다.

제4조(조직 및 편성) ①운동부는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주무 2인과 경기인으로 구성하며 편성기구도는 별표 1과 같다.(개정 '06.1.9, 2016.7.12.)

②단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하며, 부단장은 총무처장, 주무는 총무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하되, 필요시 이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06.3.29, 2016.7.12.)

③경기인으로 볼링팀은 지도자(코치) 1명과 8명 이내의 선수를 두며, 우슈팀은 지도자(코치) 1명과 5명이내의 선수를 둔다.(‘06.1.9)

④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플레이팅코치(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,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코치를 말한다.)를 둘 수 있으며, 이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지정 한다. <신설 2023.12.14.>

제5조(업무범위) ① 단장은 운동부 선수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.
- ③주무는 팀관리 운영상의 제반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담당한다.
- ④지도자(코치)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8.11.28.>

1. 우수선수의 발굴, 육성에 관한사항
2. 선수체력관리 및 경기지도, 훈련감독사항
3. 기타 성적관리 및 선수관리의 제반사항
4. 연간 대회출전계획 및 훈련계획의 수립 및 보고
5. 훈련일지 작성보고 (별지 제1호 및 제1-2호 서식)
6.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사항 보고 (별지 제2호, 제3호 서식)

⑤ 선수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훈련
2. 감독기관에서 결정한 각종 경기대회 참가
3. 공단주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

제6조(겸직금지) 경기인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7조(계약) ① 경기인은 1년 단위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계약한다. 단, 계약기간 중에 결원이 발생시에는 후임자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.
② 창단년도는 계약일로부터 계약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③ 계약기간 종료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해약된다. 단, 재계약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은 능력 및 실적을 감안하여 차등계약 할 수 있다.
⑤ 계약시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.

제8조(지도자 및 선수 선발) ① 지도자는 동일종목협회 또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, 선수는 공단 동일종목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동일종목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선발 한다.

- ② 제1항의 동일종목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볼 링 : 대한볼링협회 또는 서울특별시볼링협회
 2. 우 슈 : 대한우슈협회 또는 서울특별시우슈협회

[전문개정 2018.11.28.]

[제목개정 2018.11.28.]

제8조의2(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단장을 위원장으로,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④ 심의위원회는 선수의 영입가부, 영입할 선수의 연봉 등급 등을 심의한다.
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관리 규정 또는 이사장 방침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8.11.28.]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
 2.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 3.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

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,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
 2.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11.28.]

제9조(자격기준) 경기인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지도자 : 2급 경기지도자자격증소지자
2. 선 수 :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 또는 미등록선수중 장래가 유망한 선수

제10조(고용권한) 경기인의 고용은 이사장이 한다.

제11조(고용관리) 감독기관은 경기인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(계약직 인사기록카드 준용)를 작성,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7.12.)

제12조(계약해지) ①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.

1.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
2.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
3. 각종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,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
4.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
5.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질병 또는 사고후 완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또는 훈련에 고의로 합류하지 아니하는 자
7. 감독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8.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
9. 기타 해임의 필요가 있을 때

제13조(복무) ①공단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에 준하되 훈련계획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. (개정 2016.7.12.)

②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경기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.

③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득하였을 경우 별도의 휴가 및 성과금을 줄 수 있다.

제14조(보수) ①보수는 계약당시 약정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 단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.(개정 2008.12.11)

②보수의 지급기준은 예산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2004.11.15>

제15조(예산집행) ①예산범위 내에서 공단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②모든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집행한다.

제16조(의무) ①경기인은 공단의 훈련계획에 따른 성실한 훈련과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근로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경기인은 제5조 제4항, 제5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대회출전) ①지도자는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모든 경기대회 출전은 사전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출전한다. <2004.11.15>

제18조(기타) 건강진단, 제보험, 국민연금 등은 공단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에 따른다. (개정 2016.7.12.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규정) 여자볼링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'03.11.7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11.15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. 9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3.29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2. 11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. 1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7. 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6)(정관 제85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11.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12.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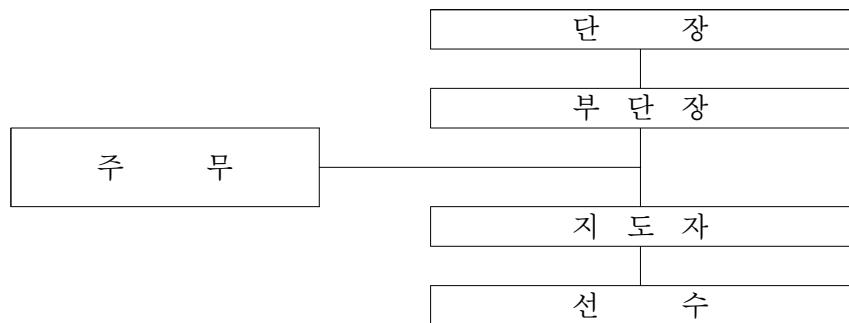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12.1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(제4조 관련)(‘06.1.9)

편성기구도



<별표 2>(제7조 관련) (개정 2012.1.1)

계약구비서류

가) 최초계약시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추천서(단체발행) | 1부 |
| 2. 근로(입단)계약서 | 2부 |
| 3. 각 서 | 1부 |
| 4. 이력서 | 1부 |
| 5. 주민등록등본 | 1부 |
| 6. 가족관계증명서 | 1부 |
| 7. 삭제 <2021.12.14.> | |
| 8. 선수등록확인서(선수) | 1부 |
| 9. 경기실적증명서(선수) | 1부 |
| 10. 경기지도자자격사본(지도자) | 1부 |
| 11. 경기지도실적증명서(지도자) | 1부 |
| 12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| |

나) 재계약시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|
| 1. 근로(입단)계약서 | 2부 |
| 2. 각 서 | 1부 |

<별지 제1호 서식> (제5조 관련)(‘06. 1. 9)

훈련일지

담당	부단장	단장

장소 : 볼링장

년 월 일(요일) 총게임수 : 게임

성명	게임수		훈련내용	평가
	오전	오후		
○ 지시사항 및 총평				

지도자: (인)

서울시설공단 볼링단

<별지 제1-2호 서식> (제5조 관련)(‘06. 1. 9)

훈련일지

담당	부단장	단장

년 월 일(요일) 장소 :

성명	훈련내용		개인평가
	오전	오후	
○ 지시사항 및 총평			

지도자 : (인)

서울시설공단 우수단

<별지 제2호 서식>

대회참가 신청서

대회명 :

기간 :

출전기간 :

장소 :

주최 :

종별 :

참가종목 :

참가인원 :

년 월 일

지도자 : (인)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

<별지 제3호 서식>

대회참가 결과보고

명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대회에 참가하고
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지 도 자 : (인)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

복 명 사 항

대회명 :

기간 :

장소 :

주최 :

출전팀수 :

경기결과

○ 전적 :

○ 자체평가 :

○ 문제점 :

○ 대책 :

개인별 참가결과

선수명	종목	전적	비고

<별지 제4호 서식> 삭제<2018.11.28.>